고용노동부

척척박사와 함께하는

노동법 상담소



연차 활용 안내 ②

연차는 제가 원하는 때에 쓰면 안되나요?



고용노동부

To. 척척박사님

사장님이 요즘 회사에 업무가 없으니
돌아가며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.
저는 가을에 쓰려고 모아두고 있었는데…
제가 원하는 때에 쓰겠다고 할 수 없나요?

From. 억울한 튜브



고용노동부

튜브님,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!
고용주가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
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배치되는 지시로서

근로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

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

⋮

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
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,
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
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
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한다



고용노동부

다만,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
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기준

**기업의 규모, 업무의 성질, 작업의 바쁜 정도,
대행자의 배치 난이도, 같은 시기 휴가 청구자의 수 등**



고용노동부

물론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에 대한
시기를 지정하고 사용을 신청하는 방법을
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



고용노동부

하지만 별도의 규정이나 사업운영에
대한 큰 지장이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
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입니다!



고용노동부

그럼에도 회사가 연차휴가 날짜를 강제한다면 **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**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



더 자세한 문의는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1350

고용노동부 민원마당(minwon.moel.go.kr) ☛ 빠른 인터넷 상담